

수원지방법원 2024. 6. 26 선고 2024가단1527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23. 11. 14.부터 위 1.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3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김동석

별지